

충청북도시·군의회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동의안은 2010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난 1. 25. 공직선거법이 일부개정되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헌법 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상하 60% 범위내로 조정

3. 주요내용

- 시·군의회 의원 정수 : 131명(현행과 같음)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계	131	26	19	13	12	8	8	8	7	7	8	8	7
비례	17	3	2	2	2	1	1	1	1	1	1	1	1
지역	114	23	17	11	10	7	7	7	6	6	7	7	6

-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별표 2)
- 시·군의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최소 40%, 최대 160% 범위내 선거구 확정
- 의원 1인당 인구편차 최소화를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증평균 증평읍 일부를 분할하여 도안면 선거구로 확정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이번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평등과 관련하여 시·군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시 인구편차 기준¹⁾을 제시함.

1) 인구편차 허용 한계는 인구비례, 지역대표성, 도농편차 등 고려할 사항이 유사한 시·도의원 확정시 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되,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함.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을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함.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반영하는 시·군의원 정수는 동법 제23조에서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확정위원회”로 약칭함)가 정하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과 선출의원 정수는 선거구 확정 위원회에서 마련하되 동법 제26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2010년 1월 18일 선거구확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구성된 선거구확정위원회는 시·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하고,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 각정당, 시·군 및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를 도지사안으로 확정하여 1월 29일 도의회에 제출됨.

나. 의원정수 책정

시·도별 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별표3)에서 정하고, 우리도 시·군의원 총정수는 131명이며 2006년도 중선거구제 도입시 시·군의원 총정수²⁾와 동일함.

시·군별 의원 정수는 당해 시·도별 시·군의원 총정수 범위내에서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정하되, 최소 정수 7인으로 하며,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을 비례 대표 정수로 하도록 하고 있음.

2) 2006년도 선거구 확정 방법 : ① 인구비율 30%, 읍·면·동비율 70% 반영 ② 읍·면·동이 9개이상인 군에 1명 추가, ③ 최하 7명, 최대 26명 범위 내에서, ④ 기타 위원들의 의견 반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책정 기본방향을 기존 시·군의원 선거구와 시·군별 의원 총수는 기존을 유지하면서 인구비율 30%와 읍·면·동 비율 70%를 적용하되, 읍·면수가 9개 이상인 군에 1명을 추가배정하고, 인구편차 기준을 감안하여 선거구 및 의원수를 일부 조정하여 조례안 별첨 1과 같이 시·군별 의원 정수를 책정하였음.

다. 선거구 획정

시·군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며 하나의 읍·면·동은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때에는 분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중선거제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1개 선거구당 의원 4명 이상부터 분구하는 것으로 하며,

지역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안에서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평균인구를 최소 40%, 최대 160%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함.

또한, 동법 부칙 제4조 「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중평군 중평읍 일부를 분할하여 도안면 선거구로 확정하는 기준인 붙임2에 의하여 총46개의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붙임3과 같이 확정하였음.

- 4인 선거구 : 2개소
- 3인 선거구 : 18개소
- 2인 선거구 : 26개소

라. 종합의견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의 최우선인 인구비례에 지역 대표성, 도농편차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거권에 대한 평등성과 경쟁자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중요함.

헌법재판소에서 정하는 선거권 평등에 대한 기본구성 요소인 인구비례와 행정구역, 교통, 지세 등 그 밖의 조건 등을 감안한 인구편차 기준의 허용 한계에서 정함.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시·군의원 선거구는 인구·행정 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하되,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이 있어 인구비율과 지역대표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일부 4인 선거구의 경우에는 지세·교통·생활권역과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선거구가 동일한 점 등 다소 쟁점이 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선거구 획정시 음성군, 보은군 경우 인구와 의원정수와 관계, 제천시 경우 인구와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정한 선거구를 획정하였다고 하였던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임.

참고사항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선거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4조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2월 28일까지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위 기간까지도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 붙임 : 1.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시·군의회 의원 정수 책정안
3.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2. 시·군의회 의원정수 책정안

구분	인구·지역반영 산출			산출 의원 정수	법 정 최 소 의원수	9읍면이상 1인추가	조정 의원 정수
	인구수의 읍면동수의	30% 70%	계				
계	1,527,478 154		99.92	131	28	6	131
청주시	643,161 30	12.63 13.63	26.26	34.41			26
충주시	206,613 25	4.05 11.36	15.41	20.20			19
제천시	135,580 17	2.66 7.72	10.38	13.61			13
청원군	149,783 14	2.94 6.36	9.30	12.19		1	12
보은군	34,845 11	0.68 5.00	5.68	7.45		1	8
옥천군	54,117 9	1.06 4.09	5.15	6.75	7	1	8
영동군	50,426 11	0.99 5.00	5.99	7.85		1	8
증평군	33,164 2	0.65 0.90	1.55	2.04	7		7
진천군	61,456 7	1.20 3.18	4.38	5.75	7		7
괴산군	36,775 11	0.72 5.00	5.72	7.50		1	8
음성군	89,716 9	1.76 4.09	5.85	7.67		1	8
단양군	31,842 8	0.62 3.63	4.25	5.58	7		7

※ 산출의원정수는 비례포함

3.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단위 : 명)

구 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원 정수	선거구역	인구수	의원 1인당 인구수 (인구편차)
	합계	114	46개 선거구	1,527,478	
청주시	소계	23	9개 선거구	643,161	27,963
	청주시 “가”선거구	3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86,183	28,728 (103%)
	청주시 “나”선거구	3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73,813	24,604 (88%)
	청주시 “다”선거구	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83,781	27,927 (100%)
	청주시 “라”선거구	3	분평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73,768	24,589 (88%)
	청주시 “마”선거구	2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54,158	27,079 (97%)
	청주시 “바”선거구	2	성화·개신·죽림동, 산남동	68,862	34,431 (123%)
	청주시 “사”선거구	2	북대제1동, 북대제2동	60,568	30,284 (108%)
	청주시 “아”선거구	3	가경동, 강서제1동	74,934	24,978 (89%)
	청주시 “자”선거구	2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 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67,094	33,547 (120%)

구 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인구수	의 원 1인당 인구수 (인구면차)
충주시	소계	17	7개 선거구	206,613	12,153
	충주시 “가”선거구	2	양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13,859	6,930 (57%)
	충주시 “나”선거구	2	주덕읍, 이류면, 살미면, 수안보면	16,750	8,375 (69%)
	충주시 “다”선거구	3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37,288	12,429 (102%)
	충주시 “라”선거구	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16,911	8,459 (70%)
	충주시 “마”선거구	2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25,533	12,767 (105%)
	충주시 “바”선거구	2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24,320	12,160 (100%)
	충주시 “사”선거구	4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71,952	17,988 (148%)
제천시	소계	11	5개 선거구	135,580	12,325
	제천시 “가”선거구	2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16,240	8,120 (66%)
	제천시 “나”선거구	2	고암·모산동, 청전동	29,718	14,859 (121%)
	제천시 “다”선거구	2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서부·영천동	33,108	16,554 (134%)
	제천시 “라”선거구	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16,775	8,388 (68%)
	제천시 “마”선거구	3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39,739	13,247 (107%)

구 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인구수	의 원 1인당 인구수 (인구면적)
청원군	소계	10	4개 선거구	149,783	14,978
	청원군 “가”선거구	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25,978	12,989 (87%)
	청원군 “나”선거구	3	남이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44,197	14,732 (98%)
	청원군 “다”선거구	2	내수읍, 북이면	28,630	14,315 (96%)
	청원군 “라”선거구	3	오창읍, 옥산면	50,978	16,993 (113%)
보은군	소계	7	3개 선거구	34,845	4,977
	보은군 “가”선거구	2	보은읍	15,400	7,700 (155%)
	보은군 “나”선거구	2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8,347	4,174 (84%)
	보은군 “다”선거구	3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11,098	3,699 (74%)
옥천군	소계	7	3개 선거구	54,117	7,731
	옥천군 “가”선거구	3	옥천읍	30,315	10,105 (131%)
	옥천군 “나”선거구	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13,927	6,964 (90%)
	옥천군 “다”선거구	2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9,875	4,938 (64%)

구 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인구수	의 원 1인당 인구수 (인구편차)
영동군	소계	7	3개 선거구	50,426	7,203
	영동군 “가”선거구	3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28,062	9,354 (130%)
	영동군 “나”선거구	2	용산면, 심천면, 양산면	9,438	4,719 (66%)
	영동군 “다”선거구	2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12,926	6,463 (90%)
중평군	소계	6	2개 선거구	33,164	5,527
	중평군 “가”선거구	4	중평읍(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사곡리 제외)	28,281	7,070 (128%)
	중평군 “나”선거구	2	도안면(중평읍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사곡리 포함)	4,883	2,442 (44%)
진천군	소계	6	2개 선거구	61,456	10,242
	진천군 “가”선거구	3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33,800	11,267 (110%)
	진천군 “나”선거구	3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27,656	9,219 (90%)
괴산군	소계	7	3개 선거구	36,775	5,253
	괴산군 “가”선거구	3	괴산읍, 칠성면, 소수면, 문광면	15,793	5,265 (100%)
	괴산군 “나”선거구	2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	9,647	4,824 (92%)
	괴산군 “다”선거구	2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11,335	5,668 (102%)

구 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원 정수	선거구역	인구수	의원 1인당 인구수 (인구면적)
음성군	소계	7	3개 선거구	89,716	12,816
	음성군 “가”선거구	3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29,580	9,860 (77%)
	음성군 “나”선거구	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36,434	18,217 (142%)
	음성군 “다”선거구	2	대소면, 삼성면	23,702	11,851 (92%)
단양군	소계	6	2개 선거구	31,842	5,307
	단양군 “가”선거구	3	단양읍, 대강면, 적성면, 단성면	17,407	5,802 (109%)
	단양군 “나”선거구	3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14,435	4,812 (91%)